

동작구의회공고 제2019-41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(Well-Dying)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9월 30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(Well-Dying)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」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오늘날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봄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하여 웰다잉(Well-Dying)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,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구민들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여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웰다잉(Well-Dying)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- 나.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5조)
- 다. 구민에 대한 웰다잉 문화 교육 및 홍보(안 제6조)
- 라.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(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323, FAX 820-1474, E-mail : jurakim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(Well-Dying)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웰다잉(Well-Dying) 문화 조성”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.
2. “사전연명의료의향서”란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

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사항
2.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3. 임종준비 교육 등 웰다잉 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4.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.

제6조(교육 및 홍보)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(민간위탁)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비밀유지)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